

산림녹지과

- 1. 입목벌채허가신청 3
- 2. 도시공원·녹지 점용허가 신청 5

1 입목벌채 허가신청

1. 민원인 해야 할 사항

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☞ 관련법규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

- 1) 벌채구역도(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)
- 2) 벌채예정수량조서 1부
- 3) 사업계획서(입목벌채등의 목적, 사업기간, 임산물의 활용계획,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)
- 4)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(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)

나. 제출처 및 처리기간

제 출 처	처 리 부 서	처 리 기 간
홍성군청 민원지적과	산림녹지과	7일

다. 수수료 및 기타 비용 : 면허세

2. 행정기관의 검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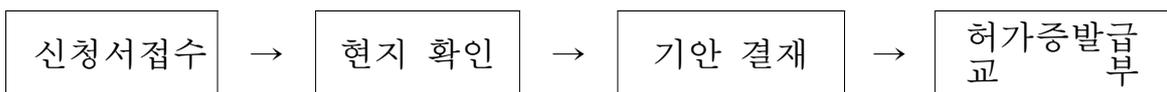
가.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

나.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

다.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(모수작업 해당)

라. 기준별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
3. 업무처리 흐름도



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17. 6. 1.>

[] 입목벌채 (변경)허가신청서 [] 임산물 굴취·채취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산림 소재지	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		
지적	m ²	구역면적	만m ²
신청내용	사업종류	용도	신청수량
벌채 또는 굴취·채취 기간			
작업방법			
변경사유			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,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·채취 (변경)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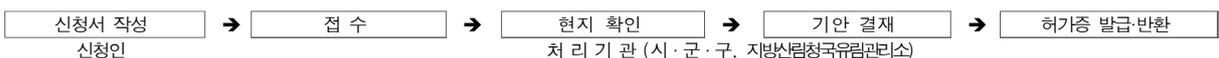
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벌채구역도(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또는 위성항법장치(GPS)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.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. 사업계획서(입목벌채 등의 목적, 사업기간, 임산물의 활용계획,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 4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(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5.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,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·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) 6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[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(의무조림을 포함한다)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 7.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○ 임산물 굴취·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굴취·채취 예정구역도(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·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또는 위성항법장치(GPS)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.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·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. 복구계획서 1부 4. 굴취·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,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·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) 1부 5. 사업계획서(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, 사업기간, 임산물의 활용계획,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 6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(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7.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○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.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·채취 허가증 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	

작성방법

1.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(m³)와 본수를, 굴취·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(kg)를 적습니다.
2.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,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2 도시공원 · 녹지 점용허가신청

1. 민원인 해야 할 사항

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☞ 관련법규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·제38조제1항

- 1) 사업계획서(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)
- 2) 공사시행계획서
- 3) 원상회복계획서
- 4) 점용허가하려는 필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- 5)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(변경허가 신청에 한함)

나. 제출처 및 처리기간

제 출 처	처 리 부 서	처 리 기 간
홍성군청 민원지적과	산림녹지과	15일

다. 수수료 및 기타 비용 : 면허세 및 점용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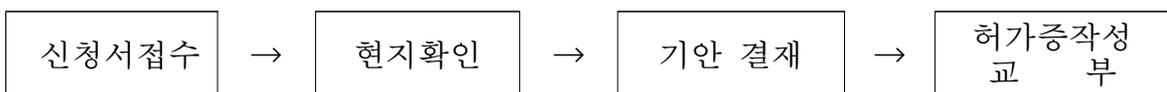
2. 행정기관의 검토사항

가. 기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

나. 지적도 및 소유자 확인

다. 사업 및 공사시행 계획이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

3. 업무처리 흐름도



[]도시공원, []녹지 점용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5일
신청자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도시공원(녹지)	명칭	
	위치	
점용목적 및 대상		
점용장소 및 면적	장소	
	면적	
점용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) 일	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,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,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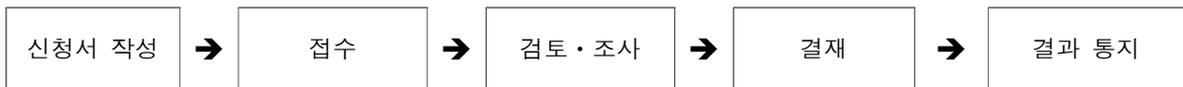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**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(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2. 공사시행계획서 3. 원상회복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지적도(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	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
군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